

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(제18조제3항 관련)

시설의 종류	요금 감면율(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)
1. 고궁 및 능원	100분의 100
2. 국공립 공원	100분의 100
3. 독립기념관	100분의 100
4. 전쟁기념관(대관공연은 제외한다)	100분의 100
5.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(대관전시 시는 제외한다)	100분의 100
6. 국공립 수목원	100분의 100
7. 국공립 자연휴양림	100분의 100
8. 국공립 공연장(대관공연은 제외한다)	100분의 50
9. 국공립 공공체육시설	100분의 50